

삼척시포상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6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6. 2.

제출자 : 삼척시장

□ 제안이유

상훈법 및 강원도포상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종전 삼척시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공적심사를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심의기관을 변경하여 포상심사의 엄격을 기하고 남발을 방지하기 위함.

□ 주요골자

- 가. 표창장의 심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도록 함. (안 제13조제2항)
- 나.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. (안 제14조제1항)
- 다.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서무계장으로 함. (안 제14조제2항)
- 라. 공적심사의결은 재적위원 2/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함. (안 제14조제3항)

□ 참고사항

- 가. 상훈법시행령 제2조
- 나. 강원도포상조례 제12조제2항 및 동조례 제13조

삼척시조례 제 호

삼척시포상조례증개정조례(안)

삼척시포상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(포상절차) 제2항중 "인사위원회"를 "공적심사위원회"로 한다.

제14조 및 제15조, 제16조, 제17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, 제17조, 제18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(공적심사위원회) ①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
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간사는 서무계장으로 한다.
③공적심사의 의견은 재적위원 2/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<p>제 13조(포상절차) ①생략</p> <p>②————— <u>인사위원회</u> —————</p> <p>—————</p> <p><u>< 신 설 ></u></p>	<p>제 13조(포상절차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————— <u>공적심사위원회</u> —————</p> <p>—————</p> <p>제 14조(공적심사위원회) ①공적심사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</p> <p>②위원장은 부시장이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서무계장으로 한다.</p> <p>③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2/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</p>
<p>제 14조(포상시기)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.</p>	<p>제 15조(포상시기) <현행과 같음></p>
<p>제 15조(2중포상금지) 같은 공적에 대하여 2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.</p>	<p>제 16조(2중포상금지) <현행과 같음></p>
<p>제 16조(포상대장의등재)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.</p>	<p>제 17조(포상대장의등재) <현행과 같음></p>
<p>제 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 18조(시행규칙) <현행과 같음></p>